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 규정

Regulations for the Florence Nightingale Medal

대한적십자사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Red Cross

(우) 100-043 서울 중구 남산동 3가 32

(Tel) 02-3705-3705 (FAX) 02-3705-3575

국제적십자위원회

※ 이 자료는 국민 여러분이 기부해 주신 적십자 회비로 제작되었습니다.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국제적십자회의에서 선포되었고 그 후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수용되었음을 상기하며, 사랑과 봉사정신에 따라 적십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아래의 제원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인 도 (Humanity)

국제적십자운동은 전쟁터에서 부상자를 차별없이 도우려는 의도에서 탄생하였으며 국제적, 국내적 능력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어디서든지 인간의 고난을 예방하고 경감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적십자의 목적은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인간존중을 보장하는데 있다. 적십자는 모든 국민간의 상호이해, 우의, 협력 및 항구적 평화를 증진시킨다.

공 평 (Impartiality)

적십자는 국적, 인종, 종교, 계급 또는 정치적 견해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하며 오직 개개인의 욕구에 따라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가장 위급한 재난부터 우선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노력한다.

중 립 (Neutrality)

적십자는 모든 사람의 신뢰를 끊임없이 받기 위하여 적대행위에 있어서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아니하며, 어느 때든지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이념적 성격을 띤 논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독 립 (Independence)

적십자는 독립적이다. 각국 적십자사는 그 나라 정부의 인도주의사업에 대한 보조자로서 국내법규를 준수하여야 하지만, 어느 때든지 적십자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항시 자율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봉 사 (Voluntary Service)

적십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득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자발적 구호운동이다.

단 일 (Unity)

한 나라에는 하나의 적십자사만이 존재할 수 있다. 적십자사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하며, 그 나라 영토 전역에 걸쳐서 맡은 바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보 편 (Universality)

국제적십자운동은 범세계적이며, 그 안에서 모든 적십자사는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서로 돕는데 있어서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진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 규정

백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 규정

제1조 1907년 「런던」에서 개최된 제8차 국제적십자회의의 건의 및 1912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9차 국제적십자회의 결의에 따라 상병자의 간호개선을 위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위대하고 특출한 업적을 기념하여 각국 적십자사로부터 기부에 의하여 기금이 설립되었다. 이 기금의 수익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생애와 그 업적을 찬양하여 주조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기장이라 불리우는 기장의 수여를 위하여 사용된다.

제2조 「플로렌스 나이팅게일」기장은 자격있는 남여간호사에게, 그리고 또한 적십자사나 그 유관의료 또는 간호사업기관의 활동적 구성원 또는 정규적 협조자인 남여간호보조봉사원에게 수여될 수 있다.
본 기장은 상기의 사람 중 평시 또는 전시에 있어서 다음의 활동에 특출한 업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될 수 있다.

- 부상자, 병자 또는 장애자 또는 충돌이나 재해의 민간희생자에 대한 특출한 용기와 헌신
- 공중보건 또는 간호교육분야에 있어서의 모범적인 활동 또는 창조적이며 개척적인 정신함양

본 기장은 수상자격이 있는 자가 순직하였을 경우 추서 될 수 있다.

제3조 본 기장은 각국 적십자사의 추천에 의거하여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이를 수여한다.

제4조 본 기장은 은도금된 것으로 만들어지며 그 표면에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초상과 「1820년-1910년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념」이라는 문구가 새겨진다. 본 기장의 이면에는 「박애의 공덕을 현양하고 이를 영원히 세계에 전한다」라고 명각된다. 그 중앙에는 수상자의 성명과 수여일자가 새겨진다. 본 기장은 홍백색리본에 의하여 적십자를 둘러싼 월계관에 부착된다. 본 기장은 양피지로 둔 훈기장과 함께 수여된다.

제5조 본 기장은 각 국에 있어 국가원수 또는 적십자사 총재에 의하여 직접 전달되거나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전달된다.
본 기장이 부여되는 높은 영예에 부합되도록 엄숙히 행하여져야 한다.

제6조 「플로렌스 나이팅게일」기장 수여는 매2년마다 행한다. 본 기장의 수여는 1회에 50개를 초과할 수 없다. 만약 광범위한 전쟁상태로 인한 예외적인 사정때문에 수여가 1회 이상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차후의 수여에 있어서의 기장의 수는 50개를 초과할 수 있다. 단 그것은 만일 그 이전에 수여가 가능하였더라도 통상적으로 수여되었어야 할 기장의 총 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7조 본 기장이 수여되는 연도의 전년 9월초부터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각국 적십자사에 대하여 회람문 및 신청서식을 발송하고 각국 적십자사가 본 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수상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후보자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제8조 각국 적십자사는 필요한 의견을 종합한 후 자사가 추천하는 후보자의 명단과 자격요건을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가 공정한 선발을 할 수 있도록 본 규정의 제2조에 의거하여 본 기장의 수여를 정당화하는 후보자의 모든 관계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모든 신청은 각국 적십자로부터 제출되는 것이라야 한다.
각국 적십자사는 1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매회의 수여시에 반드시 후보자를 추천할 의무는 없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 규정

제9조 추천은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기장이 수여되는 해의 3월 1일 이전에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도달하여야 한다. 위의 기일이 지난 후에 도달된 추천은 차 회 수여시의 선출에 회부된다.

제10조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완전한 선정의 자유를 보유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만인 신청된 후보자의 자격사항이 본 기장의 영예를 누리기에 불충분하다고 사료될때에는 예정된 개수보다 적게 수여할 수도 있다.

제11조 국제적십자위원회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탄생일인 5월 12일에 각국 적십자에 본 기장수여가 확정된 사람의 명단을 회람, 통보 발송한다.

제12조 1991년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제26차 국제적십자회의에 의하여 채택된 본 규정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에 관한 종전의 모든 규정 특히 「워싱턴」국제회의에서의 규정, 1913년 12월 24일자 규정 및 1921년 「제네바」에서의 제10차 국제회의, 1928년 「헤이그」에서의 제13차 국제회의 및 1934년 「동경」에서의 제15차 국제회의, 1952년 「토론토」에서의 제18차 국제회의 및 1981년 「마닐라」에서의 제24차 국제회의 시 채택된 후자에 대한 개정 등을 무효로 한다.

※ 본 규정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영문규정을 대한적십자사가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